

#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

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, 인허가 과정,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 자격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모든 청약자격 및 요건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.

## 특별공급 청약 일정

신청일자	신청방법	당첨자 발표
2026.05.26(화) (09:00 ~ 17: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터넷 청약</li> <li>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PC : www.applyhome.co.kr</li> <li>- 스마트폰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6.06.05(금)</li> <li>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</li> </ul>

※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발급(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) 또는 네이버 인증서, KB국민인증서, 토스인증서, 신한인증서, 카카오톡인증서 발급  
 ※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(10:00~14:00). 은행 창구 접수 불가

##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이고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함</li> </ul> </li> <li>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(태아, 입양자녀 포함)이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,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</li> </ul> </li> <li>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</li> <li>[2025.03.31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3(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) 개정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3항 출산특례 : '24.6.19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또는 '24.6.19.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)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청약신청 가능함.</li> <li>(※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)</li> <li>→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(*기존주택 처분조건의 상세 내용은 특별공급 공통사항(2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)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지역 → ②배점 → ③미성년 자녀수(태아, 입양자녀 포함) → ④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 → ⑤추첨</li> <li>① 지역 : 해당시·도 거주자(서울특별시 거주자) 50% → 기타지역 거주자(경기도, 인천광역시 거주자) 5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」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%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, 나머지 50%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(단, 해당시·도에서 경제 발생시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)</li> <li>※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</li> </ul> </li> <li>②배점 :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배점항목</th> <th rowspan="2">총 배점</th> <th colspan="2">배점기준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기준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10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미성년 자녀수 (1)</td> <td rowspan="3">40</td> <td>4명 이상</td> <td>40</td> <td rowspan="3">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</td> </tr> <tr> <td>3명</td> <td>35</td> </tr> <tr> <td>2명</td> <td>2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영유아 자녀수 (2)</td> <td rowspan="3">15</td> <td>3명 이상</td> <td>15</td> <td rowspan="3">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</td> </tr> <tr> <td>2명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1명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세대구성 (3)</td> <td rowspan="2">5</td> <td>3세대 이상</td> <td>5</td> <td rowspan="2">-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</td> </tr> <tr> <td>한부모 가족</td> <td>5</td> <td>- 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무주택기간 (4)</td> <td rowspan="3">20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20</td> <td rowspan="3">- 배우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</td> </tr> <tr> <td>5년 이상 ~ 10년 미만</td> <td>15</td> <td>- 청약신청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</td> </tr> <tr> <td>1년 이상 ~ 5년 미만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해당 시·도 거주기간 (5)</td> <td rowspan="3">15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15</td> <td rowspan="3">- 청약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</td> </tr> <tr> <td>5년 이상 ~ 10년 미만</td> <td>10</td> <td>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</td> </tr> <tr> <td>1년 이상 ~ 5년 미만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입주자처족 가입기간(6)</td> <td>5</td> <td>10년 이상</td> <td>5</td> <td>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처족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/ul> <p>※ (1), (2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(이혼·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         (3) :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(3), (4) :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적용          (4), (5) :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(6) : 입주자처족 순위확인서로 확인</p>	배점항목	총 배점	배점기준		비고	기준	점수	계	100				미성년 자녀수 (1)	40	4명 이상	40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	3명	35	2명	25	영유아 자녀수 (2)	15	3명 이상	1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	2명	10	1명	5	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-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	한부모 가족	5	- 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	무주택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- 배우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- 청약신청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해당 시·도 거주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- 청약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	1년 이상 ~ 5년 미만	5	입주자처족 가입기간(6)	5	10년 이상	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처족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
배점항목	총 배점			배점기준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기준	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성년 자녀수 (1)	40	4명 이상	40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3명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2명	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유아 자녀수 (2)	15	3명 이상	1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2명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명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대구성 (3)	5	3세대 이상	5	-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)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한부모 가족	5		- 청약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주택기간 (4)	20	10년 이상	20	- 배우자의 직계존속(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)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5		- 청약신청자가 성년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)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당 시·도 거주기간 (5)	15	10년 이상	15	- 청약신청자가 성년자(만19세 이상,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)로서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5년 이상 ~ 10년 미만	10		* 시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준이고, 도는 도·특별자치도 기준이며, 수도권의 경우 서울·경기·인천 전체를 해당 시·도로 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년 이상 ~ 5년 미만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입주자처족 가입기간(6)	5	10년 이상	5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처족의 종류, 금액,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